

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주요 개정사항 공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4.
소 방 청 장

구분	주요내용	시행																																	
필기 시험	<p>①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변경</p> <p>가. (개정사항) 경력경쟁채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무분야(구급·화학·정보통신) 세분화 및 필기시험 과목 개편</p> <p>나. (시험과목) 일반분야는 소방장 이하 경력경쟁채용에 적용 구급·화학·정보통신분야는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에 적용</p> <p>※ (응급처치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1의 2 참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수준으로 출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1. 일반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소방장 이하</p> <p>2. 구급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 소방사</p> <p>3. 화학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 소방사</p> <p>4. 정보통신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소방사</p> </div> <p>☑ 적용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소방교·장): (한국사,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화학(소방사): (한국사,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 소방관련학과(소방사): 일반분야 시험과목(소방관계법규 2法 → 6法) • 구급(소방사):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한국사·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3.1.1.																																	
	<p>② 필기시험 문항 수 기준</p> <p>가. (조정사유) 한국사, 영어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문항당 배점 축소를 통해 점수분포 확대 필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분야</th> <th>능력검정</th> <th>공통과목</th> <th>직무과목(2~1)</th> <th>과목 수</th> </tr> </thead> <tbody> <tr> <td>공채(3)</td> <td rowspan="2">한국사 영어</td> <td rowspan="2">소방학개론</td> <td>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td> <td>5 → 3과목</td> </tr> <tr> <td>경채(2)</td> <td>(일반) 소방관계법규,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화학개론, (정보통신) 컴퓨터일반</td> <td>3 → 2과목</td> </tr> </tbody> </table> <p>나. (문항 수) (공채 75문항) 소방학개론 25, 소방관계법규 25, 행정법총론 25 (경채 65문항) 소방학개론 25, 직무분야(응급처치학개론 40, 화학개론 40, 컴퓨터일반 4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시험시간</th> <th>소방학개론</th> <th>소방관계법규</th> <th>행정법총론</th> <th>직무(경채)</th> </tr> </thead> <tbody> <tr> <td>공채</td> <td>75문항</td> <td>1:15</td> <td>25문항</td> <td>25문항</td> <td>25문항</td> <td>-</td> </tr> <tr> <td>경채</td> <td>65문항</td> <td>1:05</td> <td>25문항</td> <td>-</td> <td>-</td> <td>40문항</td> </tr> </tbody> </table>	분야	능력검정	공통과목	직무과목(2~1)	과목 수	공채(3)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5 → 3과목	경채(2)	(일반) 소방관계법규,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화학개론, (정보통신) 컴퓨터일반	3 → 2과목	구분	계	시험시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직무(경채)	공채	75문항	1:15	25문항	25문항	25문항	-	경채	65문항	1:05	25문항	-	-	40문항
분야	능력검정	공통과목	직무과목(2~1)	과목 수																															
공채(3)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5 → 3과목																															
경채(2)			(일반) 소방관계법규,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화학개론, (정보통신) 컴퓨터일반	3 → 2과목																															
구분	계	시험시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직무(경채)																													
공채	75문항	1:15	25문항	25문항	25문항	-																													
경채	65문항	1:05	25문항	-	-	40문항																													

구분	주요내용	시행																							
필기 시험	<p>③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가. (출제기준) 2023년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적용 나. (참고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다. (시험범위)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시행일 기준으로 문제출제)</p> <p>④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가. (출제기준) 2023년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적용 나. (참고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 다. (시험범위)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시행일 기준으로 문제출제)</p>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소방기본법</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기본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small>(화재조사법)</small></div> </td> <td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small>(소방시설법)</small></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small>(화재예방법)</small></div> </td> </tr> </table> </div>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기본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small>(화재조사법)</small></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small>(소방시설법)</small></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small>(화재예방법)</small></div>	2023.1.1.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기본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small>(화재조사법)</small></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small>(소방시설법)</small></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small>(화재예방법)</small></div>																								
<p>⑤ 한국사, 영어 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가. (개정사항)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서 영어, 한국사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인정기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등급 또는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 처리(채점 미시행) • 영어성적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영어성적의 유효기간만 인정되므로 필히 사전등록 진행 </div> <p>1) (영어) 보유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경우 3년 인정</p>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td> <td colspan="3">영어성적</td> <td></td> <td>사전등록처</td> <td></td> <td>사전등록시</td> </tr> <tr> <td rowspan="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유효 영어 성적 보유 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토익 TOEIC</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지텔프 G-TELP</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텡스 TEPS</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www.gosi.k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rowspan="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년</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토셀 TOSEL</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플렉스 FLE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토플 TOEFL</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소방청(dlswo119@korea.kr) 전자우편 제출</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r> </table> <p>2) (한국사) 채용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제출(응시원서 접수 시 119고시(119gosi.kr)에 등록)</p>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top: 10p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시험일(면접)이 '23. 8. 15.인 경우 - (영 어) '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역산하여 3년) - (한국사) '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역산하여 4년) </div>		영어성적				사전등록처		사전등록시	유효 영어 성적 보유 자	↑	토익 TOEIC	지텔프 G-TELP	텡스 TEPS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www.gosi.kr)	↘	3년	↓	토셀 TOSEL	플렉스 FLEX	토플 TOEFL	→	소방청(dlswo119@korea.kr) 전자우편 제출	↗	2023.1.1.
	영어성적				사전등록처		사전등록시																		
유효 영어 성적 보유 자	↑	토익 TOEIC	지텔프 G-TELP	텡스 TEPS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www.gosi.kr)	↘	3년																	
	↓	토셀 TOSEL	플렉스 FLEX	토플 TOEFL	→	소방청(dlswo119@korea.kr) 전자우편 제출	↗																		

구분	주요내용	시행																				
신체검사	<p>①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확대</p> <p>가. (의료기관 확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국공립병원을 추가하여 119고시와 소방청 누리집에 공고 예정</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요약</p> <table border="1" data-bbox="359 414 1273 548">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 기준 ></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2년 기준: 57개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 종합병원 + 국공립병원 추가 지정 후 공고</td> </tr> </table> <p>※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공포일(2022.4.15.) 이후 시행되는 채용·선발시험부터 적용</p> <p>②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체격, 시력, 청력)의 합격기준 변경</p> <p>가.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격)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하며, 2)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며, 3)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 포함)이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요약</p> <table border="1" data-bbox="359 996 1273 1601">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변경 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체 격</td> <td>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체 격</td> <td>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 력</td> <td>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 력</td> <td>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 력</td> <td>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 력</td> <td>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 기준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2년 기준: 57개소	⇒ 종합병원 + 국공립병원 추가 지정 후 공고	변경 전		변경 후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체 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청 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2022.4.15.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 기준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2년 기준: 57개소	⇒ 종합병원 + 국공립병원 추가 지정 후 공고																					
변경 전		변경 후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체 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청 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응시연령 응시자격	<p>①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의무소방원 분야 응시연령 변경</p> <p>가. (개정사항)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변경</p> <p>기존 18세 이상 40세 이하 변경 20세 이상 30세 이하</p> <p>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 교육과정기준표 변경</p> <p>가. (개정사항)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추가</p> <p>기존 2년제 졸업, 4년제 재학(45학점) 변경 고등학교 졸업자 포함</p>	2022.4.15.																				

구분	주요내용	시행																																																												
채용시험의 가점	<p>① 가점 분야 확대 ※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가점 적용 안 됨</p> <p>가. (개정사항)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가점 분야 확대 및 가점 부여 시기 변경</p> <p>나. (가점분야) 기존 2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확대</p> <table border="1" data-bbox="347 421 1275 591"> <tr> <td>기존</td> <td>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td> </tr> <tr> <td>확대</td> <td>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td> </tr> </table> <p>다. (가점부여) 기존 필기시험에 부여 변경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p> <table border="1" data-bbox="347 680 1275 898"> <tr> <td>한국실용 글쓰기</td> <td>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td> </tr> <tr> <td>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영어)</td> <td>1. 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만 인정 2. 과목 대체와는 별개로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점으로 추가 인정 3.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기(정규) 시험성적만 인정</td> </tr> </table> <p>② 자격증 등 가산 방법</p> <p>가. (가산방법)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최대 5퍼센트 이내)</p> <p>※ 1. 소방업무관련분야, 2. 사무관리분야, 3. 한국어능력시험,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에 포함된 가점을 합산할 수 있으나 5퍼센트 이내에서 가능</p> <p>☑ 적용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의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인정하되, 다른 분야 가점만 합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소방업무관련 + 사무관리 + 국어 + 외국어 = 최대 5퍼센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대형(1점) + 컴활 1급(3점) + 실용글쓰기(3점) + 외국어(3점) = 5점 - (불가능) 동일 분야 합산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자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대형(1점) + 가장 유리한 자격만 인정 동일 분야 기사자격(3점)] + 실용글쓰기(3점) + 외국어(3점) = 5점 •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동일한 분야로 합산 불가 	기존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확대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한국실용 글쓰기	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영어)	1. 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만 인정 2. 과목 대체와는 별개로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점으로 추가 인정 3.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기(정규) 시험성적만 인정	2023.1.1.																																																				
기존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확대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한국실용 글쓰기	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영어)	1. 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만 인정 2. 과목 대체와는 별개로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점으로 추가 인정 3.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기(정규) 시험성적만 인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p>① 시험단계별 적용비율 변경</p> <p>가. (개정사항) 시험단계별 시험성적 적용 비율에서 필기시험은 낮추고 체력·면접시험은 강화</p> <p>나. (적용방법) 시험단계별 성적에 아래 표의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p> <table border="1" data-bbox="347 1704 1262 2024"> <tr> <td colspan="5">1.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td> </tr> <tr> <td colspan="5">- 필기 75:체력 15:면접 10 ⇨ 필기 50:체력 25:면접 25</td> </tr> <tr> <td colspan="5">2. 경력경쟁채용시험등(%)</td> </tr> <tr> <td>시험</td> <td>필기</td> <td>체력</td> <td>실기</td> <td>면접</td> </tr> <tr> <td>체력·면접</td> <td></td> <td>15</td> <td></td> <td>85</td> </tr> <tr> <td>필기·체력·면접</td> <td>75</td> <td>15</td> <td></td> <td>10</td> </tr> <tr> <td>체력·실기·면접</td> <td></td> <td>15</td> <td>75</td> <td>10</td> </tr> <tr> <td>필기·체력·실기·면접</td> <td>40</td> <td>15</td> <td>35</td> <td>10</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943 1850 1241 2024"> <tr> <td>필기</td> <td>체력</td> <td>실기</td> <td>면접</td> </tr> <tr> <td></td> <td>25</td> <td></td> <td>75</td> </tr> <tr> <td>50</td> <td>25</td> <td></td> <td>25</td> </tr> <tr> <td></td> <td>25</td> <td>50</td> <td>25</td> </tr> <tr> <td>30</td> <td>15</td> <td>30</td> <td>25</td> </tr> </table>	1.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필기 75:체력 15:면접 10 ⇨ 필기 50:체력 25:면접 25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	필기	체력	실기	면접	체력·면접		15		85	필기·체력·면접	75	15		10	체력·실기·면접		15	75	10	필기·체력·실기·면접	40	15	35	10	필기	체력	실기	면접		25		75	50	25		25		25	50	25	30	15	30	25	2023.1.1.
1.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필기 75:체력 15:면접 10 ⇨ 필기 50:체력 25:면접 25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	필기	체력	실기	면접																																																										
체력·면접		15		85																																																										
필기·체력·면접	75	15		10																																																										
체력·실기·면접		15	75	10																																																										
필기·체력·실기·면접	40	15	35	10																																																										
필기	체력	실기	면접																																																											
	25		75																																																											
50	25		25																																																											
	25	50	25																																																											
30	15	30	25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2] <개정 2022. 4. 5.>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43조제1항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경·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9] <신설 2022. 4. 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4조제2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4조 관련)

계급	분야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소방정 · 소방령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 · 소방위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항공법규, 항공영어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장 · 소방교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선택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사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비고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2. 필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및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 다. 응급처치학개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
3. 항공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4조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전자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전자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항공 분야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 운전분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 이하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 이하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분야				
소방 업무 관련 분야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어 능력검정시험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영어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일본어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중국어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기술·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

응급처치학개론의 범위(제3조 관련)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분야	내 용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1) 응급의료체계	- 구성요소, 교육 및 질관리
	2)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역할과 책임, 전문성유지
	3) 응급구조사의 안녕	- 안전과 건강, 스트레스 관리
	4) 의료/법적 책임	- 의료/법적 책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각각 하위법령 포함) - 응급구조사의 윤리
	5) 응급의료 통신 및 기록	- 응급의료 통신, 응급의료 기록
환자이송 및 구급차 운용	1) 환자구조 및 이송	- 환자이동 및 이송, 구조, 항공이송
	2) 구급차운용	- 구급차운용, 구급차 관리
대량 재난	1) 재난관리	- 재난대비계획, 중증도 분류 - 대량환자이송, 재난현장의 응급처치
	2) 특수재난	- 특수재난관리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분야	내 용	
전문심장소생술	1) 심정지	- 심정지환자의 처치, 소생후 치료
	2) 임박한 심정지	- 서맥환자의 처치, 빈맥환자의 처치 - 저혈압, 쇼크 및 급성폐부종 환자의 처치
	3) 관상동맥증후군	-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처치
	4) 뇌졸중	-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처치
	5) 특수상황 심정지	- 특수질환과 관련된 심정지 환자의 처치
전문소아소생술	1) 신생아소생술	- 신생아소생술
	2) 소아소생술	- 소아소생술
전문외상처치술	1) 손상기전과 외상진료체계	- 외상진료체계, 손상기전
	2) 연조직손상	- 연조직손상
	3) 화상	- 열화상, 특수화상
	4) 출혈 및 쇼크	- 출혈 및 쇼크
	5) 근골격계 손상	- 근골격계 손상
	6) 체강 손상	- 흉부 손상, 복부 손상
	7) 두경부 척추 손상	- 뇌 손상, 척추 손상, 두경부 손상
	8) 환경 응급	- 환경 응급
	9) 중증 손상	- 다발성 손상, 중증 외상소생술
내과 응급	1) 호흡계 응급	- 호흡계 응급질환
	2) 심혈관계 응급	- 심혈관계 응급질환
	3) 내분비계 응급	- 내분비계 응급질환
	4) 신경계 응급	- 신경계 응급질환
	5) 소화기계 응급	- 위장관계 응급질환 - 간담도취장 응급질환
	6) 비뇨생식기계 응급	- 비뇨생식기계 응급질환
	7) 조혈계 응급	- 조혈계 응급질환
	8) 면역 질환	- 아나필락시스
	9) 감염 질환	- 응급감염질환
	10) 중독 질환	- 중독 - 곤충이나 동물에 의한 독소의 주입
	11) 눈, 귀, 코, 목 질환	- 눈, 귀, 코, 목 응급질환
	12) 비외상성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의 퇴행성, 염증성, 감염성 질환
특수 응급	1) 소아 응급	- 소아평가, 소아응급, 소아외상
	2) 산부인과 응급	- 부인과질환, 산과응급 - 임신합병증, 응급분만
	3) 정신질환과 행동응급	- 정신질환, 행동응급
	4) 노인 응급	- 노인 응급질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2의2] <신 설>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과목(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과 목 명
필수과목 (1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I), 소방관계법규(II), 소방설비(I), 소방설비(II), 위험물질론, 위험물시설론, 인명구조론, 재난대응실무, 소방점검실무, 화재진압론, 응급처치론
선택과목 (19)	행정법, 소방정책론(조직·인사·예산),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지휘론, 건축법, 소방행정실무, 연소폭발론, 특수화재론, 소화설비론, 소방약제학, 피난설계론, 소방정보통신론, 제연설비론, 화재학, 화재조사론, 화생방대응론, 소방장비론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학점은 수업시간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기준으로 한다. 2. 필수과목은 8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최소 2학점 이상으로 한다. 3. 위 각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 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소방청장이 한다. 4.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I)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으로 한다. 5.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II)는 그 밖의 소방청 소관 법령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2]

(전문)대학교의 소방관련 과목(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과 목
필수과목 (1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I), 소방관계법규(II), 소방설비(I), 소방설비(II), 위험물질론, 위험물시설론, 인명구조론, 재난대응실무, 소방점검실무, 화재진압론, 응급처치론
선택과목 (19)	행정법, 소방정책론(조직·인사·예산),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지휘론, 건축법, 소방행정실무, 연소폭발론, 특수화재론, 소화설비론, 소방약제학, 피난설계론, 소방정보통신론, 제연설비론, 화재학, 화재조사론, 화생방대응론, 소방장비론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2. 2 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한다. 3. 필수과목은 8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과목당 3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위 각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소방청장이 한다. 5.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I)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으로 한다. 6. 필수과목 중 소방관계법규(II)는 그 밖의 소방청 소관 법령으로 한다. 	